

◎ School Library Problem as One of Secondary School Equalization Efforts.

中等學校 平準化에 따른 學校圖書館의 問題點

※ 第12回 全國圖書館大會에서 發表된 主題論文 1部를 掲載한 것임.

玄 源 明
〈東仁川高等學校 校監〉

1968年 7月 15日에 公布된 中學校無試驗進學制度와 74年度부터 部分的으로 實施된 高等學校無試驗進學制度는 우리나라 教育의 一大 轉換點을 갖어올 것이며 또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새로운 教育의 問題들이 提起되고 있다. 그중 72年末에 一段落된 中學校平準化 問題는 우리나라 教育轉換點을 위한 一次的 事業이었으며 現在 進行되고 있는 高等學校平準化 作業은 보다 擴大 發展 시키려는 作業이다.

이와 같이 平準化 問題가 教育의 量的 膨脹에서 質的 向上을 企圖하려는 革新的 教育作業일진데 이와 같은 狀況속에서 教育의 基本施設로서의 學校圖書館 問題를 생각하여 볼은 뜻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흔히 中學校平準化라 하면 施設 및 教師의 平準化를 意味하는 듯하나 實은 中等學校 教育活動 및 教育에 關係되는 모든 活動과 이에 必要한 諸般人的, 物的 條件의 平準化를 意味하게 되어 그 範圍는 大端히 넓으나 여기서는 施設 및 人的 立場과 圖書館의 立場에서 平準化에 따라 學校圖書館에서 提起되고 있는 問題들을 생각하여 보기로 하겠다.

1. 施設의 平準化

施設의 平準은 學校施設 設備基準令(1967年 10月 26日 大統領令 第3253號)에 따른만큼 이 基準令中 學校圖書館과 關係된 部分을 보면 다음과 같다.

(正改前)

第五條 (校舍) ① 교사는 학습과 보건위생상 적합한 것으로서 이에 적어도 다음과 같은 시설을 두어야 한다. 다만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하나의 시설을 다른시설로 겸용할 수 있다.

1. 학급수에 상당하는 보통교실(학급당 기준면적은 복도를 포함하여 90평방미터 이상으로 한다)
2. 각 교과에 필요한 특별교실
3. 자료실
4. 과학실험실

5. 도서실
6. ~12. 略

또 同令 第16條 및 附則 第2項의 規定에 따라 文教部令 第201號(1968年 10月 17日)로 公布된 “學校年度別 施設補充計劃에 관한 件”中 中學校圖書館에 關聯된 項을 보면

(1) 別表 1: 學學施設 設備基準令 第16條의 規定에 해당하는 學校의 年度別 施設 補充計劃

	開校後 1年 이내	開校後 2年 이내
令第16條에 의한 殘餘 施設	70%	100%

(2) 別表 2: 學校施設 設備基準令 附則 第2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學校의 年度別補充計劃

地 域 別	施設·設備	1968年	1969年	1970年
서울特別市	體育場, 校舍垜地 校舍, 기타 施設, 設備	80%	100%	
釜山市, 仁川市 大田市, 大邱市 全州市, 光州市	體育場, 校舍垜地 校舍, 기타 施設, 設備		80%	100%
其他地域	施設設備		80%	100%

이와 같은 學校施設設備基準令은 73年 9月 14日 大統領令 第6854號로 改正 公布되었는데 改正法文을 보면 제5조 (校舍) ① 교사는 학습과 보건위생에 적합한 것으로서 이에 적어도 다음의 시설을 두어야 한다.

1. 보통교실(1학급당 실내면적의 기준은 63평방미터 이상으로 한다)
2. 과학교과에 필요한 특별교실과 그 준비실
3. 음악 또는 미술교과에 필요한 특별교실과 그 준비실
4. 기술교과에 필요한 특별교실과 그 준비실
5. 시청각교실 및 그 준비실
6. 도서실
7. ~8. 略

으로 科學 및 藝能, 實科 視聽覺 活動을 위한 施設은

보다 구체화되었다. 또 學校圖書館에 關하여도 滿足할 만한 施設基準은 못되지만 最低의 施設基準이 6項에 提示되고 있다. 그 基準은 열람좌석수와 비치도서의 수를 다음과 같이 표시하였다.

(별표 3) 도서실의 열람좌석수 및 비치도서수

구분	열람좌석수	도서수
국민학교	보통교실 겸용	1학급당 단행본 100권 이상
중학교	1학급당 3석, 다만 학교마다 20석 이상이어야 한다.	1학급당 단행본 120권 이상, 다만, 학교마다 500권 이상이어야 한다.
고등학교 실업고등, 전문학교 전문학교	1학급당 5석, 다만 학교마다 20석 이상이어야 한다.	1학급당 단행본 150권 이상, 다만, 학교마다 600권 이상이어야 한다.

大略 施設平準化에 따른 學校圖書館 設置에 關聯된 系譜를 概觀하였거니와 이것은 母法인 圖書館法 公布以來 複雜한 節次와 圖書館人들의 努力과 오랜 時間을 겪은 뒤에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分明히 解決하여야 할 問題는 그대로 內包하고 있다. 即 圖書館法 第25條 設置에 따른 施設基準이 따로 具體的으로 提示되어 있지 않다는 點이다

圖書館法 第3章 學校圖書館 第25條(設置) ② 學校圖書館의 施設基準은 따로 閣습으로 定한다.

라고 規定되어 있지만 上記와 같이 座席數와 圖書數

(별표 2) 學校敎具設備基準令

中學校敎科別 敎具의 種目과 基準

교과명	구분	교구명	규격	학급별 소요량							비고			
				3	6	9	12	15	18	19				
國語	말하기지도 자료	쓰기지도자료	듣기지도자료	읽기지도자료	스크랩북	3	6	9	12	15	18	19		
						1	1	2	2	3	3	4		

人文系高等敎科別 敎具의 種目과 基準

교과명	구분	교구명	규격	학급별 소요량							비고			
				3	6	9	12	15	18	19				
國語	말하기지도 자료	쓰기지도자료	듣기지도자료	읽기지도자료	① 녹음테이프	1	1	2	2	3	3	4		
						1	1	2	2	3	3	3		

에 대한 部分的인 것이 提示되었을 뿐 學校級間的 “視聽覺敎育機器의 種目과 基準”에서와 같은 具體的인 施設基準이 없다. 더욱이 敎育法 第7條의 敎具設備基準을 보면

敎育法 第7條(교구) 各급 학교에서는 학과 또는 교과별로 필요한 도서, 기계, 기구, 표본, 모형 등의 교구를 두어야 한다.

라고 定해져 敎科別 必要한 圖書를 두게 되어 있지만 가장 密接한 國語科 읽기지도 자료에서조차 圖書에 對한 具體的인 指示가 없다.

(問題點)

(1) 圖書館法에 의하면 學校圖書館 設置는 단순한 勸獎事項이 아니고 義務事項으로 되고 있다. 따라서 學校는 當然히 學校圖書館을 設置했어야 할 것임에도 不拘하고 72年末에 一段落진 中學校平準化에 있어서도 敎具設備의 平準化를 強力히 要求했을 뿐 施設은 既히 認可한 事實을 감안하였기 때문에 큰 進展은 없었을 것으로 豫想된다.

(2) 藏書는 中學校 學生 1人當 2卷 高等學校는 1人當 3卷을 敎具設備基準으로 提示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利用할 수 있는 圖書에 對한 배려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학생 1인당 장서수

	학생수	장서수	학생 1인당 권수
국민학교	2,474,898	4,293,572	1.7권
중학교	743,520	1,917,173	2.6 //
고등학교	1,019,833	2,754,436	2.7 //
계	4,238,251	8,965,181	2.1 //

※ 학생수는 새한신문사 편, 한국교육연감 1972년판 참조.

(3) 中學校平準化가 敎育의 正常化와 敎育效果의 極大化를 期하러는데 있다면 近代敎育의 媒體가 될 敎育 Media Center로서의 學校圖書館에 對한 보다 強力한 平準化가 推進되지 않는한 期待할 수 있는 學校圖書館의 施設平準化는 어렵다.

2. 人的平準化의 問題

여기서 司書敎師란 一線敎師로서 學校圖書館에 關한 240時間以上의 講習을 取得한 敎師를 基準으로 생각한

有資格司書敎師의 分布狀況

	學校數 (A)	圖書館數 (B)	有資格司書敎師 (C)	C/A × 100	C/B × 100
國民學校	6,910	1,352	46	0.7%	3.4%
中學校	1,640	316	117	7.1%	37.0%
高等學校	889	592	256	28.8%	43.2%
합계	9,439	2,260	419	4.4%	18.5%

※ 金斗弘: 全國圖書館實態調查(學校圖書館篇) 통계에 의한.

다. 全國의 資格證所持者로서 學校圖書館에 從事하는 者의 數는 419名에 不可하다.

司書教師에 關한 關係法을 母法인 圖書館法과 教育公務員法에서 考察하여 본다.

圖書館法 도서관법 시행령 중

제6조(사서직원 또는 사서교사등의 배치기준) 1항 및 제26조 규정에

1. 國民學校에는 1인이상의 司書教師와 1인이상의 司書의 職務를 담당할 教師를 둔다.

2. 中學校와 高等學校에는 그 學生數가 1,200인이하인 때에는 1인의 司書教師와 1인의 司書의 職務를 담당할 教師를 두며, 그 學生數가 1,200인을 초과할 때에는 2인의 司書教師나 2인의 司書의 職務를 두게 되어 있으나 問題는 司書教師의 資格의 問題가 教育現場의 큰 問題로 登場하고 있으니 教育法中 司書教師資格基準을 보면 다음과 같다.

(별표 1)

학교별	중등학교	국민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사서교사	1. 대학졸업자로서 재학중 도서관 학과를 전공하고 소정의 교과과정을 이수한자 2.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소정의 사서교사 양성강습을 받은자			

이와 같이 司書教師의 資格은 實技教師 및 養護教師와 함께 特殊教師의 系列에 속하게 하여 昇進의 機會가 부여 되어 있지 않고 學校級間의 資格區分이 되어 있지 않다.

또 文敎部는 1968년에 33名の 司書教師 T/O를 配定한바 있으나 1969年以後에는 한 사람도 配定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處事는 文敎部가 司書教師 T/O에 關聯된 法條文을 忘却하였거나 아니면 無視한것으로 생각한다. 여하튼 司書教師 T/O에 關한 限 文敎部는 法治行政의 原理를 正面으로 外面하고 있는 事實이다.

(問題點)

(1) 司書教師는 一線教師의 資格과 所定의 講習을 履修함에도 不拘하고 上級資格獲得이 不可能한 뿐만 아니라 主任教師昇進의 機會마저 없고 司書教師로 再任命되면 一般教師보다 格下된 特殊教師系列에 속하게 된다.

(2) 따라서 一線教師는 司書教師講習受講自體를 기피하거나 講習履修者라 할지라도 資格取得을 기피하고 있는 實情이다.

(3) 司書教師轉出入에 있어서도 一般教師와 같은 所持資格證에 對한 배려가 尠혀 되어있지 않다. 그래서 人的平準化를 期待하기는 遙遠한 問題이며 最少 教導主任程度의 배려가 必要하다.

3. 圖書館人의 立場에서 본 平準化

1950年以後 教育의 中心的인 場으로서의 學圖書館의 導入은 1964年을 起點으로 急激한 成長을 하여왔다 그러나 이러한 學校圖書館成長의 裏面에는 늘 解決하여야할 課題들이 換言하면 學校圖書館平準化를 위한 根本的인 課題들이 뒤 따랐으며 이 解決을 위하여 圖書館人들의 많은 努力이 있었다.

1962年 第一回全國圖書館大會로부터 11회까지의 大會建議案中 學校圖書館에 關係되는 案件을 추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학교도서관 관계 건의 사항

건의내용	연도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건의수
도서관 정책 수립		○									○		2
장학체계 확립(문교부, 시, 군에 담당자 배치)		○	○	○	○		○		○	○	○		8
도서관 운영비 확보		○	○	○	○						○	○	7
도서관 교과과정 배정		○											1
도서관 연구학교 설치		○											1
사서교사 양성기관 강화				○			○						2
사서교사 주당시간수 감안					○								1
교육공무원법 개정(사서교사 자격, 보수)						○		○					2
사서교사 T/O확보							○	○	○	○			4
국민학교 사서교사 자격 제정										○			1

(問題點)

(1) 建議事項은 계속적인 問題解決을 위한것이 못됐고 繼續的인 그때마다의 答申으로서 끝나고 말았다.

(2) 司書教師의 問題는 學校圖書館의 問題이면서 教育公務員에 關한 限 問題解決의 主導力을 一線教育行政家들의 關心속에서 解決토록 努力했어야 했을것이다 以上에서 보든바 學校圖書館의 바른 發展과 平準化를 위하여 여러 가지 關聯된 問題들이 提起되었으며 그중에서도 特히 制度의 確立과 豫算에 確立을 바랐던 것이다. 現在 12年間 우리 圖書館人들의 絶叫과 念願은 解決의 曙光을 보지 못하고 있다.

知識情報의 爆發이란 現代社會에 있어 이에 適應하기 위하여 허다한 새로운 教育方法이 解放以後 이땅에 紹介되었고 또 實踐되어 왔다. 그러나 이 모든 새로운 學習指導方法은 教授—學習活動의 能率化와 效率化를 도모하는데 即 知識을 傳達하고 蓄積하는데만 主力하였을뿐 이 傳達蓄積된 知識을 보다 높은 次元으로 維持發展시켜 學習하는 技術을 學習하는 能力에 대한 것은 소홀하였는 感이 있다. 現代의 意味로서의 學校圖書館은 現代教育의 모든 主要目標達成에 積極的으로

寄與할 수 있는 潛在의 能力을 갖고 있다고 본다. 다만 韓國의 風土에 土着化할 수 있는 學校圖書館의 理論과 目的과 方法의 定立과 이에 따른 우리 圖書館人들의 實踐안이 學校圖書館의 定着과 平準化를 促求하는 筈이다.

(附錄) 各大會때마다 學校圖書館에 關한 建議案件

年 度	開 催 地	建 議 案 件(略述)
第一回大會 62. 7. 21~22	서울	1. 학교도서관의 위치를 올바르게 인식하여 확고한 국가의 도서관 정책을 확립. 2. 도서관 행정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문교부내에 도서관국(또는 과)를 독립시키고 지방에는 담당장학관을 배치. 3. 학교도서관 운영을 위한 재정적 조치. 4. 초·중고등학교 교과과정에 도서관의 효용을 위한 과목 배정. 5. 각시도 마다 학교도서관 지정연구학교를 설치.
第二回大會 63. 9. 19~20	부산	1. 학교도서관 담당부서를 문교행정 기구 내에 설정. 2. 사서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 확대 강화. 3. 중·고등학교 자율경비에 도서비를 정수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월 20원정도)
第三回大會 64. 9. 25~26	대구	1. 학교도서관 육성지도를 위한 장학체계 확립. 2. 중·고등학교 자율적 경비중 도서관비를 정수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월 30원정도) 3. 학교도서관 담당교사의 수업시간을 주

第四回大會 65. 4. 26~27	전주	1. 문교부에 도서관 행정을 담당할 수 있는 부서 마련을 요망. 2. 사서교사에 대한 교육공무원법 및 보수규정 개정.
第五回大會 66. 5. 18~19	제주	1. 사서교사 TO 확보 2. 학교도서관 예산 대책 3. 사서교사 훈련기관 증설
第六回大會 67. 5. 25~26	서울	1. 사서교사 TO의 조석한 배정 2. 장학체계 확립 요망(시,도 교육위원회에 학교도서관 담당할 장학사 배정)
第七回大會 68. 5. 23~28	인천	1. 교육공무원법 중 사서교사 자격기준과 보수규정 개정(사서교사도 1,2급으로 구분) 2. 사서교사 TO의 증배요망
第八回大會 69. 9. 15~17	춘천	1. 국민학교 사서교사 자격기준 제정요망 2. 사서교사 TO의 증배요망 3. 장학체계의 확립 4. 도서관 정책의 종합계획 수립
第九回大會 70. 6. 11~13	대전	1. 학교도서관 장학체계 확립요망 2. 도서관임비 증액
第十回大會 71. 9. 16~18	서울	1. 학교도서관 육성을 위한 장학행정 체계 확립 2. 도서관 운영비 정수 요망
第十一回大會 72. 9. 13~15	대구	1. 학교도서관 운영비 확보 요망
第十二回大會 10. 4~5	광주	1. 사서교사강습을 연수강습으로 2. 상급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기준으로 3. 자율학습에 독서지도와 도서관 이용지도를

(15面에서 繼續)

(c) 文字는 一般의 順

Mercury (metal)

Mercury (Planet)

Mercury amalgams

Mercury arc rectifiers

Mercury lamps

Metal finishing

Metallurgy

Metals

Metal working

이상에서 說明한 바와 같이 이 檢索語表는 用語의

意味, 階層, 觀點 등이 잘 統制되어 있어 科學技術分野(一部 社會科學 포함)의 情報分類, 蓄積, 檢索 및 配布에 대단히 有用한 資料이다.

그러나 Descriptor가 너무나 統制되어 있어 自然語와의 融通性이 없는 一種의 코오드이기 때문에 使用法을 充分히 理解한 후에 活用하여야 한다.

<Reference>

U.S. Department of Defense. Thesaurus of Engineering and Scientific Terms.1967. AD-6 2,000

ALA

目錄카드 排列規則

李 丙 洙 譯

값 1,500원

連絡處: 圖協 事務局

電話·(22) 4864·5613

ISO Recommendation for Documentation

(文獻研究 英文資料叢書 第1輯)

鄭 駉 謨 編著 (값 3,000원)

韓國文獻記號表

鄭 駉 謨 編 (값 1,800원)

連絡處: 中央大學校 圖書館學科

電話·(69) 5031~6